

위례 A2-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2020.12.30. 14페이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 세대구성(3)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유주택자인 경우 만60세가 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 불가" 문구삭제 및 유의사항 변경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구분	기존	정정
25page	• 각종홍보물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	• 각종홍보물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문구 삭제)
26page	• 중학교는 한빛중학교, 중앙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배정할 예정입니다. 향	• 중학교는 관내 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
(학교)	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page	• 609동 4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	• 609동 3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
(동별 현황)	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200000	• 609동 4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	• 609동 3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
28page (평면)	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82)	• 74A1형의 안방드레스룸, 주방창의 높이는 500mm입니다.	• 74B형의 안방드레스룸, 주방창의 높이는 500mm입니다.
29page (가구 및 마감재)	• 74A1, 74T, 84P2타입의 주방창 높이는 500mm입니다.	• 74B, 74T, 84P2타입의 주방창 높이는 500mm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위례자이 더 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www.wirye-xi-thecity.com)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단,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갤러리 내 전시 된 마감재 등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 ※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2주 이내 해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위례자이 더 시티 분양 상담 전화(1644-3260) 및 청약홈 콜센터(1644-74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소득, 자산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단축근무가 시행되고 있사오니, 사전에 미리확인하시어 현장 청약신청 불가, 증빙서류 발급 불가, 계약금 입금 불가 등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공공주택지구내 위례 A2-6블록 800세대

▮공급대상 : 위례 A2-6블록 800세대 중 공공분양 360세대

(전용면적 74m'A 74세대, 74m'B 55세대, 74m'T 4세대, 82m' 6세대, 84m'A 142세대, 84m'B 75세대, 84m'P1 3세대, 84m'P2 1세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2.29(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428이며, 공고문은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되며, 카탈로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은 위례자이 더 시티 사이버 견본주택(www.wirye-xi-thec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 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이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에 따라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18.12.29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18.12.29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금회 공급하는 성남시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2년)이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이 청약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 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무 주택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 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 복신청은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 시행의 이호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탁로 인해 서착수이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취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본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0년 적용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 되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시행령」제73조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

- 분양권 전매제한 부기등기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사업 주체는「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거주의무 부기등기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5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의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제1항에 의거 입주자는 거주의무기 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이라고 표기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 기간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 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 정	2021.01.11.(월)	2021.01.12.(화)	2021.01.13.(수)	2021.01.19.(화)	2021.03.02(克) 2021.03.02(호) 2021.03.0 ~ 2021.01.27.(수) ~ 2021.03.06(토) (예비순반0 기간 성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내방 접수 (10:00~16:00)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 스마트폰 앱: 구글 또는 애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 (대상자:특별공급 및 일				
비고	※ 스마트폰 앱: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 "창약 Home" 검색 ※ 서류접수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일에는 앞 순번 부터 잔여세대수의 300%만 서류접수를 받으며, 그 외 예비입주자 서류접수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2020.03.08.(월)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 서 청약 가능함.



※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 갤러리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 범위 이내의 예비입주자를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주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호 첫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서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서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m'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또는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 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동일 세대로 봄)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부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 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 규모

- 위례 A2-6블록 800세대 중 : 공공분양주택 지하 2층 ~23층 11개동 전용면적 85m'이하 360세대 (일반공급 74세대, 특별공급 286세대)
- 주차장 천장고 : 지하1층 차로부분 유효천장고 2.7m, 주차구획부분 2.3m

2. 공급대상

					세다	l당 주택면	!적(m²)						공급서	∥대수						
블록	주택형	주택	발코니	공급	l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	불공급			ОІНЬ	외관	최하층 배정	입주 예정
		타입	유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면적 (계)	(m²)	계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일반 공급	층수		시기
					합 계					360	33	104	86	15	15	33	74	23	18	
	74.9800A	74A	확장	74.9800	26.3420	9.8365	48.5494	159.7079	46.8425	74	7	22	18	3	3	7	14	22	4	
	74.9700B	74B	확장	74.9700	26.2594	9.8351	48.5430	159.6075	46.8131	55	5	16	13	2	2	5	12	21	3	
	74.9500T	74T	확장	74.9500	25.2241	9.8325	48.5300	158.5366	46.4990	4	-	1	1	-	-	-	2	2	-	
위례	82.9300	82	확장	82.9300	28.4501	10.8794	53.6971	175.9566	51.6083	6	-	1	1	-	-	-	4	4	-	'23.03
A2-6	84.9600A	84A	확장	84.9600	29.1284	11.1457	55.0115	180.2456	52.8663	142	14	42	35	7	7	14	23	23	7	예정
	84.9400B	84B	확장	84.9400	29.8431	11.1431	54.9985	180.9247	53.0654	75	7	22	18	3	3	7	15	23	4	
	84.9800P	84P1	확장	84.9800	32.1137	11.1483	55.0244	183.2664	53.7523	3	-	-	-	-	-	-	3	23	-	
	84.9600P	84P2	확장	84.9600	31.1684	11.1457	55.0115	182.2856	53.4646	1	-	-	-	-	-	-	1	22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



- 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동.호별 주택형(타입)이 상이하오니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 × 0.3025 또는 m'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신성건설㈜」와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사업명: 위례 A2-6블록, 공동사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신성건설㈜, 시공: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신성건설㈜ 입니다.
- ※ 본사업장(위례 A2-6)은 지에스건설㈜ 단독 시공으로 분양관리 및 하자 책임은 지에스건설㈜ 단독 책임으로 귀속되며, 브랜드(단지명 포함)는 지에스건설㈜의 브랜드만 단독 사용합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
주택형	타입	동/라인(호)	층별	세대수	주택가격	계약금 2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 기금)
				<u>'</u>		계약 시	′21.07.15	′21.11.15	′22.03.15	′22.06.15	′22.09.15	′22.12.15	입주	시
			1층	4	661,300,000	132,260,000	66,130,000	66,130,000	66,130,000	66,130,000	66,130,000	66,130,000	57,260,000	75,000,000
		601동 3호	2층	2	675,200,000	135,04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0,040,000	75,000,000
74.9800A	74A	602동 3호 603동 3호	3층	2	682,200,000	136,44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8,220,000	61,440,000	75,000,000
		610동 2호	4~10층	26	696,100,000	139,22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9,610,000	64,220,000	75,000,000
			11층 이상	40	703,100,000	140,62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70,310,000	65,620,000	75,000,000
			1층	3	657,300,000	131,46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56,460,000	75,000,000
		604동 3호	2층	3	671,100,000	134,220,000	67,110,000	67,110,000	67,110,000	67,110,000	67,110,000	67,110,000	59,220,000	75,000,000
74.9700B	74B	608동 2호	3층	3	678,000,000	135,6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0,600,000	75,000,000
		609동 2호	4~10층	21	691,900,000	138,38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9,190,000	63,380,000	75,000,000
			11층 이상	25	698,800,000	139,76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9,880,000	64,760,000	75,000,000
		611동	1층	2	753,300,000	150,66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660,000	75,000,000
74.9500T	74T	1호, 2호	2층	2	753,300,000	150,66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660,000	75,000,000
			2층	2	753,300,000	150,66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330,000	75,660,000	75,000,000
82.9300	82	602동 3호 603동 3호	3층	2	761,100,000	152,22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6,110,000	77,220,000	75,000,000
		0038 32	4층	2	776,600,000	155,320,000	77,660,000	77,660,000	77,660,000	77,660,000	77,660,000	77,660,000	80,320,000	75,000,000
			1층	5	739,400,000	147,880,000	73,940,000	73,940,000	73,940,000	73,940,000	73,940,000	73,940,000	72,880,000	75,000,000
		601동 2호, 4호	2층	6	755,000,000	151,0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6,000,000	75,000,000
		602동 2호, 4호 603동 4호	3층	6	762,800,000	152,56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7,560,000	75,000,000
		609동 3호	4~10층	42	778,400,000	155,68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77,840,000	80,680,000	75,000,000
84.9600A	84A		11층 이상	66	786,100,000	157,220,000	78,610,000	78,610,000	78,610,000	78,610,000	78,610,000	78,610,000	82,220,000	75,000,000
			2층	1	760,300,000	152,060,000	76,030,000	76,030,000	76,030,000	76,030,000	76,030,000	76,030,000	77,060,000	75,000,000
			3층	1	768,100,000	153,62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6,810,000	78,620,000	75,000,000
		608동 1호	4~10층	7	783,800,000	156,76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78,380,000	81,760,000	75,000,000
			11층 이상	8	791,700,000	158,34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83,340,000	75,000,000
			1층	2	729,000,000	145,8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0,800,000	75,000,000
		601동 1호	2층	4	744,400,000	148,88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4,440,000	73,880,000	75,000,000
84.9400B	84B	602동 1호 605동 1호	3층	4	752,100,000	150,420,000	75,210,000	75,210,000	75,210,000	75,210,000	75,210,000	75,210,000	75,420,000	75,000,000
		609동 1호	4~10층	28	767,400,000	153,480,000	76,740,000	76,740,000	76,740,000	76,740,000	76,740,000	76,740,000	78,480,000	75,000,000
			11층 이상	37	775,100,000	155,02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77,510,000	80,020,000	75,000,000
84.9800P	84P1	601동 3호 602동 3호 603동 3호	22~23층	3	979,800,000	195,96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97,980,000	120,960,000	75,000,000
84.9600P	84P2	604동 3호	22층	1	971,700,000	194,340,000	97,170,000	97,170,000	97,170,000	97,170,000	97,170,000	97,170,000	119,340,000	75,000,000
		1				1	1	1		L			l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융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NH농협은행	계약시 팀	별도 안내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

■ 발코니확장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 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금액 [단위:원]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나십	0804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74A	6,120,000	1,224,000	612,000	4,284,000
74B	6,120,000	1,224,000	612,000	4,284,000
74T	5,420,000	1,084,000	542,000	3,794,000
82	6,730,000	1,346,000	673,000	4,711,000
84A	6,900,000	1,380,000	690,000	4,830,000
84B	6,940,000	1,388,000	694,000	4,858,000
84P1	7,080,000	1,416,000	708,000	4,956,000
84P2	7,020,000	1,404,000	702,000	4,914,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 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금액 납부 안내 [단위 : 원]

구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20%	계약시			
중도금	공급금 액의 10%	′21.05.17	NH농협은행	계약시 5	별도 안내
잔금	공급금액의 70%	입주시			

- ※ 상기 계좌는 [발코니확장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및 플러스옵션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 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별도품목(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별도품목(발코니확장)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별도품목(발코니확장)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옵션

- ※ **플러스옵션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세공과금은 포 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플러스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미확장 시 현관중문, 하이브리드쿡탑은 선택 가능하나 그 외 플러스옵션은 선택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78	240	걸시되시	64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122	
74A, 74B	선택①	거실+침실1	3,690,000	738,000	369,000	2,583,000		
74T, 82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80,000	1,216,000	608,000	4,256,000		
	선택①	거실+침실1	3,690,000	738,000	369,000	2,583,000		
84A, 84B	선택②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080,000	1,216,000	608,000	4,256,000	LG전자 (Multi V모델)	
	선택③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7,280,000	1,456,000	728,000	5,096,000		
0.401 0.402	선택①	거실+침실1+가족실	4,650,000	930,000	465,000	3,255,000		
84P1, 84P2	선택②	거실+침실1+가족실+침실2+침실3	7,280,000	1,456,000	728,000	5,096,000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전타입 선택 가능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 치된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에는 거실, 침실1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부형 에어컨 매립 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 [단위 : 원]

타입 품목명	프무대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18	품극장		7160 X 120	0887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017
	광파오븐	LG전자	MZ385EBTD	520,000	104,000	52,000	364,000	
	김치냉장고 (BI)	LG전자	K221PR14BL1/BR1	1,600,000	320,000	160,000	1,120,000	
전타입	냉장고(BI)	LG전자	S711SI24B	6,330,000	1,266,000	633,000	4,431,000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	1,270,000	254,000	127,000	889,000	
	하이브리드쿡탑 (3구)	쿠첸	CIR-S3216FLBE	500,000	100,000	50,000	350,000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단위 : 원]

타입	제품명 및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418	세품당 및 포질당	0004	계약 시	′21.05.17	입주지기간	2177	
74A, 74B, 74T, 82, 84A, 84B	1 Fix 2 Sliding Door	1,500,000	300,000	150,000	1,050,000		
84P1, 84P2	1 Fix 2 Sliding Door	1,620,000	324,000	162,000	1,134,000		

※ 현관 중문 선택 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 [단위 : 원]

타입	품목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다입	古寺で	크시키시	0804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0177			
74A, 74B, 82			730,000	146,000	73,000	511,000				
74T			670,000	134,000	67,000	469,000				
84A	유럽산	거실/주방/복도	840,000	168,000	84,000	588,000				
84B	포셀린 타일	포셀린 타일 바닥	바닥	바닥	바닥	740,000	148,000	74,000	518,000	
84P1			1,010,000	202,000	101,000	707,000				
84P2			1,060,000	212,000	106,000	742,000				

※ 바닥 포셀린 타일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바닥 포셀린 타일 시공은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강화합판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트월 및 벽체 마감재 [단위:원]

타입	프모며	품목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기념 급극 6	870	르시	0807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12	
74A, 74B, 82			1,380,000	276,000	138,000	966,000		
74T	①유럽산 대형	①거실/복도/주방 ②현관/거실/복도/ 주방	1,320,000	264,000	132,000	924,000		
84A	포셀린 타일		1,390,000	278,000	139,000	973,000		
84B			1,550,000	310,000	155,000	1,085,000		
84P1	②시트판넬		2,270,000	454,000	227,000	1,589,000		
84P2			2,380,000	476,000	238,000	1,666,000		

※ 유럽산 대형 포셀린 타일/시트판넬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럽산 대형 포셀린 타일/시트판넬 시공은 미선택 시 '거실아트월은 포셀린 타일', '주방벽은 도기질 타일', '현관/복도/거실면은 벽지'로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단위 : 원]

타입	품목명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10%)	잔금(70%)	비고
기법 품극정	급극장	걸시되시	0804	계약 시	′21.05.17	입주지정기간	미끄
74A, 82			2,060,000	412,000	206,000	1,442,000	
74B	_ 71 H T M	0.71 N. O. E. + 1.T. L. II	1,990,000	398,000	199,000	1,393,000	
74T	①간접조명	①거실 우물천장 내	1,990,000	398,000	199,000	1,393,000	
84A	②라인조명	②거실 아트월/복도 단천장	2,790,000	558,000	279,000	1,953,000	①+②+③+ ④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
84B	③특화조명	③거실/식탁/침실등	2,700,000	540,000	270,000	1,890,000	
84P1	9-4-0	9/12/77/020	2,570,000	514,000	257,000	1,799,000	
84P2			2,570,000	514,000	257,000	1,799,000	

※ 조명 특화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시공은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1개소(간접조명 미포함), '거실/식탁/침실등은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옵션 안내

타입	품목명	기본형	선택형	비고
전타입	가족욕실	욕조 타입	샤워부스 타입	-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
건덕표	스타일(목창호, 걸레받이, 강마루 디자인 스타일)	Light Tone	Medium Tone	- 미선택 시 기준성으로 시중 -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단위 : 원]

구분	납부금액	납부 시기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 액의 20%	계약 시				
중도금	공급금 액의 10%	′21.05.17	NH농협은행	계약시 별도 안내		
잔금	공급금 액의 70%	입주 시				

-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서류접수 시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 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플러스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별도품목(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별도품목(플러스옵션)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별도품목(플러스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플러스옵션 유의사항

- ※ 플러스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시하고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플러스옵션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플러스옵션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플러스옵션 공급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플러스옵션(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이후 해지 시, 위약금(공급금액의 10%)이 발생하며, 중도금 1차 납입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 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 플러스옵션 품목은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 상품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공급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침실 표기는 e-카탈로그 기준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플러스옵션은 발코니확장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 시에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정한 내 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발코니 수전류, 현관 집진 청소기	설배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백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택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74A	74B	74T	82	84A	84B	84P1	84P2
금액	25,700,000	25,660,000	25,080,000	28,290,000	28,940,000	29,100,000	29,730,000	29,480,000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 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 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 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 (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 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 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 자에게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 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위례신도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 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3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8.12.29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18.12.29 전입한 경우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2.29)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8.12.29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18.12.29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 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18.12.29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18.12.29**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선정 단계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 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성남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2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부 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 공급비율	지역 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2.29)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18.12.29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18.12.29 전입한 경우 포함)
(2020.12.23)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처리 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포함)·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 우선 공급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및 경기도 2년 미만 거주])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 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 자 발표(2021.01.19)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협의양도인 . 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싱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 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m'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 도시지역의 경우 무허가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 후 변동된 자산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 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	기준 세부내역	
			• 건 ^후 용	축물 가액은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ä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토지	단, - I 고 - I - I E	아래 경우는 「농지법」저 과 소유자로 「초지법」저 걸장 소재지 공부상 도로 종중소유 토 입주(예정)자	- 제외 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 등재된 경우 1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 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2,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 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 = 경우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0년식 자동차를 2019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55,729원) 추가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 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 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특별공급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이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 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 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 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 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7.4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장기복무군인 제외)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 활력 증진/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경기 동부보훈지청), 의사상자.다문화가족(경기도청), 장애인(경기도청,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화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 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1.11.)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충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 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12.30~2020.12.2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포함)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기준표

교적으스	총	배점 기준		비고				
평점요소	배점	기 준	점수	비 프				
계	100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3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3명	30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 (2)	15	2명	10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세대구성 -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3)	3	한부모 가족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 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10년 이상	20					
기 간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4)		1년 이상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				
(5)		1년 이상 ~ 5년 미만	5	세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J 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 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 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 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u>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u>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u> </u>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앙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단위: 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년 미만 거주])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 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충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 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 증빙 또는 전 배우 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1년 미만 거주포함]) 거주 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한 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 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성남시)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 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чг. ·	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443,986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 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 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충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 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 우 계약이 해제된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포함])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 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충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전산 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충별.항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성남시(2년 이상 거주), 경기도(2년 이상 거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 접수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세대주이신 분 -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II.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IV │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 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신청자 본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조회기준일 입력(2020.12.29.) →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 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1.19)로부터 10**



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 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 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학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협의양도인 . 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2021.03.08.(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에 게 재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 범위 이내의 예비입주자를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 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된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시책으로 예비입주자 비율이 상향 조정(투기과열지구 내 80%에서 500%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된 예비입주자로 인하여 사전서류접수 기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또 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만 인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π. 신청기준'의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삐 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1.01.11.(월) (청약 Home :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견본주택: 10:00~14:00)	
일 반 공	• 1순위	2021.01.12.(화) (08:00~17:30) 2021.01.13.(수)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부동원 청약 Home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PC : www.applyhome.co.kr	
급	• 2순위 -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 . 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1. 인터넷 신청(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08: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견본주택, 10:00~14:00):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주택전시관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특별 공급 당첨자 제출서류」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00~16:00):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 접수 불가)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 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번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 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성남시 또는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 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 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 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당첨자발 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한국부동신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	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Ⅷ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1.01.19.(화) 08:0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2021.01.22(금)~01.27(수) 10:00~16:00	2021.03.02(空)~03.06(토) 10:00~16:00	2021.03.09.(화) ~ 2021.03.10.(수) (예비순번에 따라 기간 상이)	2021.03.08.(월) 당사 홈페이지 고지 (www.wirye-xi-thecity.com)
(www.applyhome.co.kr)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 갤러리 (대상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2021.03.08.(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해당 동·호수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등은 견본주택 내 혼잡 및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의 300%를 대상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동호 추첨 등 우선 공급하며, 해당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차순위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	기간	2021.01.19.(화)~2021.01.28.(목) (10일간)
인터	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1.01.1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써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 2021.01.22. ~ 01.27. 예비입주자 : 2021.03.09. ~ 03.10.)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 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	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mark>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mark>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0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0			본인	※ 반드시 인정시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시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 <mark>상세</mark> '로 발급
0		⑤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0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0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표6>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0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합(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안)가 서명함
공통서류	0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0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 상세 '로 발급
		0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 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 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0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 한 경우
	0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협의양도인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0	①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존비속을 배점에 산정한 경우
다자녀가구		0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공급		0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지)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0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0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특별공급		0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0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0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0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1202		0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분양 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0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자유배배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0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 공급		0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7206		0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7>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2019.12.30.~2020.12.29)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① 무통장 입금증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플러스옵션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각각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계약 시	③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본인 서명날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 게시 예정] 및 증빙서류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제3자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 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여건

Fig. Wie	일반사항	• 각종 흥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흥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인허가	 각종흥보물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0년12월 24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 현황	 단지 608, 609동 동측에는 근린상업용지, 607동 동측에는 주차장용지, 606동 동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 남측에는 광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업은 GS건설+태영건설+계룡건설산업+신성건설이 공동시공하는 사업장이며, GS건설이 주관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학교	● 어찌트 대에는 무극됩 제3.5.2에 먹다 어른어합이 의무극으로 불자되어, 예공 어린어합 시킬은 공유어오목합 제12도 제38 및 공합 시공8 제15도의2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운영에 관한 협약을 성남 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교는 고운초등학교에 분산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관내 중학교에 학생들을 추첨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표준학군배정방법 등 경기도 교육청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 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609동 남측면에는 발전기용 급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측 일부동은 주변 개발 시 공사용 먼지,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면한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1동은 테라스동으로 승강기는 1층과 2층만 운행하며, 중앙 광장에서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하여 동선이 연결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과 복도로 연결됩니다 • 611동 단위세대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난간에 구조물이 설치되며 세대별 개소 및 형태는 상이합니다. •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함께 혼합되어있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및 공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관리사무소는 607, 608동과 인접하여 설치되며, 게스트하우스는 608, 609동과 인접하고, 티하우스는 607, 608동 주변에, 어린이집은 601, 602, 608, 610동 과 인접하여 설치됩니다.
	동별현황	603, 604, 605동 지하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며, 인근동에 인접하여 공용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운영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1동 전면에 외부용 승강기와 외부계단이, 604동 1호라인 인접하여 외부용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601동 지하1층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6동 전면에 주차장 경사로 및 경사로 지붕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소음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4동 3호라인 일부에 유리마감재가 설치되며, 거실과 안방은 창호가 입면분할창으로 시공됩니다. 주변동은 빛반사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 601, 602, 603, 604동은 4호라인은 입면변화로 충별로 발코니 형태가 상이하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승강기는 기계실이 없는 시스템이며 운행 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5동 3호라인 1층에 611동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조망에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9동 3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 승강장홀, 계단실의 창호크기 및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후 청약하시기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602동, 604동, 605동, 608동 옥상층 등 일부구간 및 602동, 607동 지하1층과 지하2층의 동전기실과 PIT입니다.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충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동의 동, 호수, 충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상 및 건물 측면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



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배치도 등을 통해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텃밭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새싹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와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데크층과 테라스하우스는 석재외에 ,목재, 치장벽돌, 페인트 등의 마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관 계획

- 단지 주 진입부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주 진입부에 위치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문주설치로 인한 세대 조망 간섭,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04동 외벽에 일부 유리마감재(커튼월룩)가 설치됩니다. 인접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1동 측벽에 장식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주변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일부구간에 옥상장식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주변세대에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 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 작은도서관)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사정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돌봄센터는 성남시에서 운영 예정이며, 실 계획 등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맘스스테이션은 601, 604동 하부에 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안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혐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우수저류조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602동, 604동, 605동, 608동 옥상층 등 일부구간 및 602동, 607동 지하1층과 지하2층의 동전기실과 PIT입니다.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015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1,018(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주차대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9개소(급속3, 완속6)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속 전기차 충전설비 중 1개는 AC삼상, DC콤보,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이며, 나머지 2개는 DC콤보와 DC차데모 커넥터 내장 타입입니다. ■ 지하주차장에 세대용 창고가 240개 설치되며고 동별 배치 수량은 차이가 있으며 주차장 혹은 승강장홀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배분 등 운영법 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611동(테라스동)은 지하1층 주차장만 직접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통행로의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구분되나 단지출입구는 공동으로 상용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를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평면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세대의 기준층 천장 높이는 2300mm이며 611동 및 펜트하우스는 2400mm입니다.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602, 603, 604동 2호라인 1층세대의 드레스룸 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74T형의 드레스룸, 주방, 다용도실 창은 높이 0.5m의 낮은 창이 설치됩니다. 611동(테라스동)은 후면으로 창문이 설치되나 채광 및 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74T형 단위세대 전면 옥외공간(테라스) 난간에 구조물이 설치되며 세대별 개소 및 형태는 상이합니다. 같은 주택형이라도 돌출발코니 형태 등에 따라 평면 형태가 상이하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609동 3호라인의 아트월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준세대와 반대방향(거실/침실2 간벽)에 설치됩니다 74B형의 안방드레스룸, 주방창의 높이는 500mm입니다.
단위세대	발코니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 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측벽 및 천장에 최소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째 및 마감째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피난구를 통해 대피하하여야 합니다. 1층과 피로티상부층, 611동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 항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성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호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사이버 견본 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04동 3호라인 일부에 유리마감재가 설치되며, 거실과 안방은 창호가 입면분할창으로 시공됩니다. 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 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옥외 공간 (테라스)	• 602, 603동의 3호라인 2~4층의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세대 전용공간입니다. 테라스 우수처리를 위해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602, 603동의 3호라인 5층세대, 611동 전체세대, 팬트하우스는 옥외공간(테라스)이 설치됩니다. 당해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시 개방하여야하며, 등기 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옥외공간(공용공간 테라스)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 및 통기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 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선택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 중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페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스타일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74B, 74T, 84P2타입의 주방창 높이는 500mm입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기 기계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와 인접하여 각동 승강장홀의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시스클라인은 해당실의 면적에 따라 용량이 상이할수 있고 모양 및 설치 위치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 욕조의 모양 및 재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원패스 카드는 세대당 1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시 확정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 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표현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 사이버 견본주택 미표현 된 타입 46m', 49m', 55m'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59m'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미표현 된 타입 74m², 82m², 84m²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m²A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동영상 및 사진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GS건설 표준화조명이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3500K적용되며,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보이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 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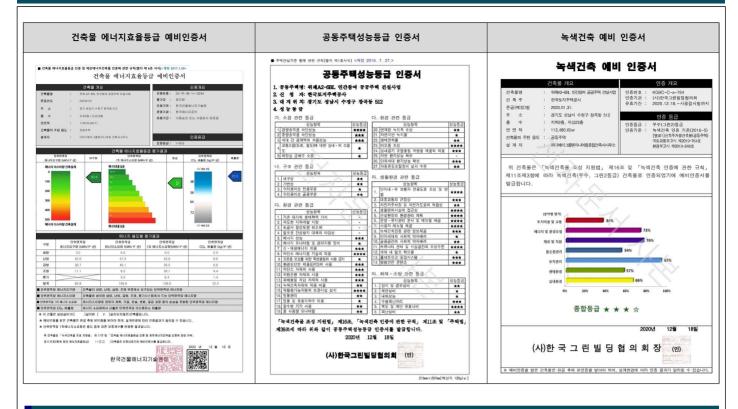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법」제3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1 경관추경은 비타서는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1 . 0 =1=1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가. 소음 관련 등급	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u></u> ★
	1. 내구성	**
나. 구조 관련 등급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다. 환경 관련 등급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생활환경 관련 등급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취계 시반기가 드그	3. 내화성능	*
·. 화재·소방관련 등급	4. 수평 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의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충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급
내진설계 중요도I	VII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천원]

·앙가격 공시		7 8		[단위 : 선원
		구 분	태기고그기경	총 액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159,448,28 4,231,31
	택지비		필요적 경비	128,57
	1.1-1		그 밖의 비용	4,671,49
			<u> </u>	168,479,67
			토공사	1,460,20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80,63
			옹벽공사	78,13
			석축공사	70,13
			우수·오수공사	468,80
			공동구공사	400,00
		토목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82,82
			도로포장공사	429,74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2,370,39
			부대시설공사	78,13
			' л л д	5,048,86
			공통가설공사	3,737,63
			가시설물공사	768,89
			지정 및 기초공사	512,59
			철골공사	612,27
			철근콘크리트 공사	22,953,05
			용접공사	,555,65
			조적공사	493,61
			미장공사	1,684,93
			단열공사	1,161,65
			방수·방습공사	882,81
			목공사	1,006,21
		71 🛧	가구공사	3,289,17
		건축	금속공사	669,22
	공사비		지붕 및 홈통공사	23,73
	6시비		창호공사	4,480,49
			유리공사	156,62
			타일공사	1,680,18
			돌공사	1,993,44
건축비			도장공사	683,46
			도배공사	522,74
			수장공사	2,962,21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925,52
			계	51,200,53
			급수설비공사	1,078,05
			급탕설비공사	1,197,83
			오·배수설비공사	958,27
			위생기구설비공사	1,197,83
		기계설비	난방설비공사	1,796,7
		기계걸비	가스설비공사	359,3
			자동제어설비공사	479,13
			특수설비공사	598,9
			공조설비공사	1,437,40
			٦ ٢٦ (١ / ١ / ١ / ١ / ١ / ١ / ١ / ١ / ١ / ١	9,103,5
			전기설비공사	5,712,9
		7 40 77	정보통신공사	3,207,93
		그 밖의 공종	소방설비공사	2,874,8
			승강기공사	1,145,33
			계	12,941,09
		T HIOL THUI	일반관리비	1,049,09
		그 밖의 공사비	이윤	736,1
			계	1,785,20
			설계비	873,82
			감리비 이바보야되셨건비	1,472,21
			일반분양시설경비	1,419,48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금	168,66
			보상비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58,02
			그 뉴의 사업비장 정미	3,992,20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6,894,55
		뭐의 미종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대화감정평가법인	나. 대한감정평가법인
160,041,670,천원	160,497,629천원	159,585,711천원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택지비 기	 산비							건	·축비가산비									
항목			흙막이	흥막이 기간 /말뚝 이자 박기 공사비	/말뚝 기타 박기 비용	/말뚝 기타 박기 비용	/말뚝 박기			건축 구조	법정초과 공동	공동주택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치하겨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사업승인
07	` 기 기간	기간 이자	기타 비용					계	7소 형식 가산 비	보리시설 설치비용	성능등급 가산비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초고속 통신	기계 환기 설비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건강 친화형 주택	지하 주차장 층고 증가 추가 비용	부가조건 가산비
금액	169,106,665	4,247,066	4,688,875	129,055	16,957,422	-	1,661,127	1,980,334	3,181,472	560,889	1,452,414	1,931,821	2,106,936	46,366	1,418,146	732,088	1,885,829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위례 A2-6	한국토지주택공사 (135-82-14276)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태영건설 (105-81-74543) 계룡건설산업㈜ (314-81-07954) ㈜신성건설 (418-81-10256)	지에스건설(주) (104-81-18121) ㈜태영건설 (105-81-74543) 계룡건설산업㈜ (314-81-07954) ㈜신성건설 (418-81-10256)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KD엔지니어링

9. 위례자이 더 시티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례자이 더 시티 견본주택

- 위치안내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GS자이 갤러리
 -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갤러리 내 전시 된 마감재 등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 ※ 예약제로 운영되며 방문 가능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www.wirye-xi-thecity.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 $\overline{\gamma}$ 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견본주택 일반 관람이 불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됩니다.
- 운영시간 : 10:00~18:00

위례자이 더 시티 홈페이지	분양문의
■ 주 소 : www.wirye-xi-thecity.com	1644-3260 (10:00 ~ 18:00)